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생활숙박시설 모집공고

PRUGIO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건축과 -14539호(2020.07.30)]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임.[허가번호 2019-건축과-신축허가-36](2019.12.27.)
■ 견본주택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9

공급대상물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 대지면적 : 전체 8,154.70㎡
- 건축면적 : 5,294.0629㎡, 용적률 : 997.85% 건폐율 : 64.92%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120,354.2410㎡(금회, 생활숙박시설 95,512.5315㎡분양)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6층~지하1층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지상3층~지상48층 생활숙박시설(지상24층 피난안전구역)
- 공급규모 : 지상3층~지상48층(금회, 생활숙박시설 690실 중 552실 분양)
- 착공신고일 : 2020년 7월 22일, 건축물사용승인 예정일 : 2024년 4월 예정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급 후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이전등기"
공급대상

(단위 : ㎡)

군	타입	공급실수	실별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1군	74	108	74.1802	29.3994	103.5796	4.9591	41.6157	150.1544	10.7272
	74약자형	3	74.4180	29.4936	103.9116	4.9751	41.7491	150.6358	10.7615
2군	88A	185	88.3716	35.0238	123.3954	5.9079	49.5772	178.8805	12.7794
	88B	111	88.1552	34.9380	123.0932	5.8935	49.4558	178.4425	12.7481
	88C	108	88.4138	35.0405	123.4543	5.9108	49.6009	178.9660	12.7855
	88D	35	88.3007	34.9957	123.2964	5.9032	49.5374	178.7370	12.7691
	88A약자형	2	88.8477	35.2165	124.0642	5.9807	49.8631	179.9080	12.857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금액 : 원, VAT포함)

군	타입	층	구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분양가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차(10%) 2020.11.16	2차(10%) 2021.03.15	3차(10%) 2021.09.15	4차(10%) 2022.05.16	5차(10%) 2022.12.15	6차(10%) 2023.07.14	잔금(30%) 입주지정시
1군	74	8~48	최저가	318,989,870	276,918,300	27,691,830	623,60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187,080,000
			최고가	352,443,890	305,960,100	30,596,010	689,0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06,700,000
	74-약	7	최저가	318,989,870	276,918,300	27,691,830	623,60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62,360,000	187,080,000
			최고가	332,494,240	288,641,600	28,864,160	650,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95,000,000
2군	88A	7~48	최저가	365,078,650	316,928,500	31,692,850	713,70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214,110,000
			최고가	392,598,990	340,819,100	34,081,910	767,500,000	76,750,000	76,750,000	76,750,000	76,750,000	76,750,000	76,750,000	76,750,000	230,250,000
	88B	7~48	최저가	357,559,230	310,400,700	31,040,070	699,0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최고가	381,294,170	331,005,300	33,100,530	745,40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74,540,000	223,620,000
	88C	7~47	최저가	368,863,940	320,214,600	32,021,460	721,10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216,330,000
			최고가	390,706,290	339,176,100	33,917,610	763,800,000	76,380,000	76,380,000	76,380,000	76,380,000	76,380,000	76,380,000	76,380,000	229,140,000
	88D	7~42	최저가	365,078,650	316,928,500	31,692,850	713,70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214,110,000
			최고가	380,424,560	330,250,400	33,025,040	743,70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74,370,000	223,110,000
	88A-약	7	최저가	365,078,650	316,928,500	31,692,850	713,70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71,370,000	214,110,000
			최고가	368,863,940	320,214,600	32,021,460	721,10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72,110,000	216,330,000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TPS실 등), 관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공용이 상기 공급면적에 포함되어 있음. •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 •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계산 상 단수 정리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면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 공용부분에 따라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은 상기 공급 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숙박시설 입주자 소유가 아닌 시설임.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 주변여건 등의 조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최저가와 최고가로 나누어 표기했으며, 호실별 공급금액은 공급안내 책자에서 확인하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지분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동·호수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부여한 동·호수로서 향후 건축물대장에 등재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공급대금과 별도로 계약자는 유상옵션을 선택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며, 유상옵션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임.
- 중도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계약금은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고 계약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음. •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발생되며,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단, 입점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본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조건은 공급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상옵션
1. 플러스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①현관중문+간접조명 금액	②고급형 주방가구 금액	③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금액	④고급형 아트월 타일 금액	⑤객실1 드레스룸 특화 금액	⑥거실/주방 바닥 고급타일 (무상선택)	⑦객실2,3 통합평면 (무상선택)	⑧발코니부위 단차 및 바닥 마감재 선택 (무상선택)
74	1,760,000	3,270,000	② 미선택	880,000	3,740,000	2,000,000	1) 강마루 2) 고급타일	1) 기본형 2) 통합형	1) 단차있음+발코니타일 2) 단차없음+강마루
			② 선택	1,650,000					
88A	1,760,000	3,360,000	② 미선택	1,480,000	7,630,000	8,500,000			
			② 선택	2,480,000					
88B	1,760,000	3,360,000	② 미선택	1,480,000	6,880,000	2,660,000			
			② 선택	2,480,000					
88C	1,850,000	3,080,000	② 미선택	1,480,000	3,660,000	4,800,000			
			② 선택	2,170,000					
88D	1,760,000	3,360,000	② 미선택	1,480,000	9,160,000	8,500,000			
			② 선택	2,480,000					

2. 가전 옵션
① 시스템 에어컨(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선택안	실내기	실내기 설치위치	금액	비고
전타입	기본	3대	거실, 객실1, 객실2	-	
	선택	4대	거실, 객실1, 객실2, 객실3	1,200,000	

② 빌트인 가전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품목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금액	비고
전타입	전기쿡탑	기본제공	SK매직	ERA-BT300	-	
		선택1		ERA-HF30E	480,000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선택2		IHR-BF311	700,000	인덕션3구
전타입	전기오븐	선택1	삼성전자	HSB-N361B	420,000	
		선택2		NQ50H5533KS	650,000	

- 모든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하며, 발코니부위에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따라 결로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라인에는 PVC분합문이 기본으로 시공되며, 실제 사용 시 공간이 다소 협소하거나 공간활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알루미늄 3연동 슬라이딩도어 및 천장 간접조명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객실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옵션은 객실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본 공사시 제조사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유리 사양, 제품형태, 디자인 등) • 현관중문 및 간접조명 옵션 미선택 시 간접조명을 위한 우물천장 또한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천장으로 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사항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 시 주방 벽타일, 인조대리석 주방상판이 기본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사항 및 샘플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객실1 드레스룸 특화옵션 선택 시 이태리산 하드웨어가 적용된 쇼케이스형 시스템가구가 설치되며, 미선택 시 기본형 파우더장(3면 거울장), 가구도어, 시스템선반이 설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객실1 드레스룸 특화옵션은 호실별로 사이즈가 다르게 설치되어 이에따른 옵션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급형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유럽산 전동 하드웨어가 적용된 후드장(3면 거울장), 가구도어, 시스템선반이 설치됩니다. 및 아일랜드형 후드가 설치됩니다.(발코니 후드 설치)
- 고급형 주방가구 옵션 선택 시 천장에서 떨어져 있는 플랩형 상부장이 설치되며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설치부위 증가로 인해 금액상승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아트월타일 옵션 선택 시 이태리산 대형 아트월 타일(1000*2400)이 발코니 부위까지 연장되어 설치됩니다. 벽시트 판넬과 천장 다운라이트가 시공됩니다.(미선택 시 기본 아트월타일(400*800), 도배지, 직부등이 설치됩니다.) • 고급형 아트월타일의 경우 본 공사 시 분절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아트월타일 옵션 미선택 시 시트판넬부위는 도배지로 시공되며 일반 직부등이 설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아트월타일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대형 아트월타일은 실 거주자가 TV 설치 시 전문가의 타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등의 하자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객실2, 3 통합평면 옵션(무상)의 경우 74타입에만 붙박이장이 설치되며, 88타입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객실2, 3 통합평면 옵션(무상) 미선택 시 객실 사용 및 가구배치 등 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의 경우, 타입별로 인테리어 컨셉과 평면에 따라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므로 교차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 단차 및 바닥 마감재 선택옵션에서 단차있음+발코니타일 선택 후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에서 바닥 고급타일을 선택하더라도 발코니부위는 발코니타일로 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 단차 및 바닥 마감재 선택옵션에서 단차없음+강마루 선택 후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에서 바닥 고급타일을 선택할 경우 발코니부위는 강마루 대신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와 동일한 바닥 고급타일로 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 단차 및 바닥 마감재 선택옵션에서 단차없음+강마루 선택 시 결로에 의한 하자로 강마루 변색, 도배지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실내기 3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유상으로 1개소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객실 2,3 통합평면 선택시에는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추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 전기쿡탑 선택1, 선택2인은 기본제공 품목인 전기쿡탑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기본품목 미설치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콤비냉장고 및 김치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배치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공급
- 본 시설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에 따라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을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으로 함.
- 거주자 우선공급은 청약신청자 중 안양시 거주자를 우선대상으로 추첨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청약자에 포함함.

청약신청자격
- 분양공고일(2020.07.3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군" 별 1건씩, 총2건까지 신청 가능함.(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한 청약시 정상 진행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가능 건수를 초과할 시 청약 자체를 무효로 함) • 청약신청은 푸르지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견본주택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함

청약신청 방식 및 일정
- 청약 및 당첨자 선정은 당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정하며,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 확인 가능함
- **청약일정**

구분	공급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0.08.03 (10:00~18:00) ~ 2020.08.04 (10:00~18:00)	-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홈페이지 청약사이트 접속 (https://www.prugio.com/house/2020/pyeongchon/application.aspx) - 법인은 견본주택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함
당첨자 발표	2020.08.05 (15:00)	- 당사 인터넷 청약 및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당첨자 및 동·호수가 결정 됩니다.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 하여야 합니다.
계약일자	2020.08.06 (10:00~16:00) ~ 2020.08.07 (10:00~16:00)	견본주택 진행

- 당 청약접수 경쟁률은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 **청약신청 방법**

http://www.prugio.com 회원가입 ▶ 푸르지오-신규분양-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선택 ▶ 청약신청 ▶ 청약금 입금 ▶ 청약완료

- 청약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푸르지오 회원가입 되어 있어야 함. (법인은 견본주택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1개군 청약	300만원	㈜하나은행	581-910051-04204	코리아신탁㈜
2개군 청약	600만원			

※ '군'당 청약금 300만원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금은 청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
- 청약신청 종료일 18:00까지만 청약신청금 납부가 가능함. - 청약신청금 계좌는 공급대금 납부 계좌와 다름.
- 법인의 현장청약 접수 건은 청약마감 후 일괄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등록됨.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일시 : 2020. 8. 21 이후부터 청약신청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일괄 송금.(환불일시는 5일 이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환불시 청약 신청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제출한 환불계좌 오류, 환불불가 계좌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금은 당첨과 무관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청약신청금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법인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법인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법인의 구비서류는 청약 접수건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해야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당첨자 확인은 홈페이지(www.prugio.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함.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의 경우 위탁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청약이후 푸르지오 홈페이지의 가입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회원을 탈퇴할 경우 5년간 동일 아이디로 재가입이 불가함.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푸르지오 회원이용약관을 참조하기 바람.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개인)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 생활숙박시설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생활숙박시설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가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함.
-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생활숙박시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281-910020-96205	코리아신탁㈜
중도금/잔금	㈜하나은행	호실별 가상계좌	코리아신탁㈜

-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공급 호수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될 예정이므로, 호수별로 계좌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포함한 공급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예금주 ㈜코리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대금을 관리함.
- 매수인의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금액 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공급대금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입금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401호를 계약한 정대우 → 401 정대우)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생활숙박시설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타입별로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본 상품 중도금 대출시 제2금융권을 통해 조달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계약조건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위탁사 및 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위탁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타 호실 계약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의 입주 시기는 단지내 타 시설(근린생활시설 등)과 입주(입점)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 본 목적물이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되었음을 인지하고 건축법상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발코니 확장은 불가하므로 관계법령과 일반관계를 준수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입주예정월 : 2024년 04월(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생활숙박시설
- 본 건물은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임.
- 본 건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 본 건물 취득시에는 4.6% 취득세가 발생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가 지정하는 관리운영회사가 입주 이후 6개월 간 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입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관리운영회사를 유지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단, 입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등이 결성되지 못하여 관리운영회사의 교체 또는 유지에 대하여 의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탁사가 지정한 관리운영회사가 관리단 등이 결성되고 의결이 가능한 시점까지 본 생활숙박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본 생활숙박시설의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사가 상기 관리운영회사와 준공 이전에 체결하는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관리운영계약)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는 것을 승계함. 위탁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은 추후 별도 통보하며,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입주 후 상기 관리운영회사가 관리운영, 서비스제공 및 시설관리를 함.
- 관리운영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상기 관리운영회사가 본 생활숙박시설을 관리운영, 서비스제공 및 시설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체, 시공사 및 위탁사에게 관리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본 상품은 비주택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상품은 공유숙박업 운영이 불가함.
- 본 상품은 비주택 상품이나 향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본 상품의 주택보유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생활숙박시설의 성질에 의문이 있을시 공고문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상품의 성질에 대한 무지를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위탁사에 주장할 수 없음. • 생활숙박시설 내에 제공되는 발코니는 냉난방, 환기 및 위생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구역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의거하여 확장사용이 불가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는 위탁사 또는 위탁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본 건물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
- 생활숙박의 입주를 위한 호실별 인테리어 진행 가능하며, 구조안전 및 주거와 관련된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의 인테리어에 대하여 계약자는 동의하기로 함.

단지 관련
- 당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 각종 평가(교통영향평가 등)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외 품목이나 기본 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88㎡A타입은 전용면적과 실구성, 개수가 동일한 1,2,3타입으로 세분화됨.
  88㎡A1형 타입은 객실3에 창문이 추가하였고 88㎡A1형, 88㎡A2형은 각 동에서 동일 위치고 88㎡A3형은 위치가 다름.(각 동 평면을 확인 요함)
- 약자형의 경우, 공용욕실에 욕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차가 적은 배리어프리형 단위세대로 설치됨.
-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였음.
-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 계산 상 단수 정리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용면적은 지하층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면적을 포함되어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됨.
- 물건 운반 시 지상층 조경, 바닥 마감 및 고층 건축물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이용한 물건 운반은 가능함.
- 소방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생활숙박시설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지하1층 램프에는 입주차량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의 동선 분리를 위하여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타일줄눈 및 각 액세서리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층 공개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 내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외관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중 · 저층 호실에서는 당 부지와 인접한 건물과의 프라이버시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중간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 전기실 · 휀룸 · 공조실 · 승강기기계실, 피난안전구역, 하부 피트에 의하여 위 · 아래층에 위치하는 호실은 타 호실과 비교하여 다소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 호실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호실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단위호실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와 CG,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심의, 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type)이더라도 호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외부조망사진 및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호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호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음 등)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호실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 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호실에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 이동통신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인접동 및 인접호실에 의해 조망권 및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야간조명 효과, 차량 진출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항공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동 외벽에 항공장애등이 설치 운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부지 내 조경시설물, 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소방, 이삿짐) 구획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부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근접한 호실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부지 차량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DA 급 · 배기구,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 조망, 빛 반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가 환기시스템 및 공조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호실의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는 차량이동 시 조명 소음, 빛 반사,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 및 중간층(피난층)에 기계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있어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창호(개폐 및 환기창 포함)는 향후 풍압 · 풍동 시험 및 최적화 설계,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분할크기, 색상, 하드웨어, 디자인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전기기(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면과 동일하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콤비냉장고 및 김치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배치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사용 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폿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일부 호실은 공사시행 중에 샘플호실로 사용될 수 있음. • 호실 내의 창호크기, 개폐방향, 설치 위치 및 세부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호실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생활환경(대형수족관,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과다한 음식물조리 등)에 의한 과다습기 발생,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상대습도증가)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등 적정 상대습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북측 호실의 경우 방향에 따른 일사량 차이에 의한 결로 취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보완을 하여야 함.
- 준초고층건물의 특성에 따라 본 공사 시 인테리어의 마감 등은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호실의 천정에는 환기설비를 위한 덕트가 설치되며,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또한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준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연돌효과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계획 변경 및 추가 설치 등 기밀성능 향상을 위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 될 수 있음.
- 준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본 설비가 공사용으로 사전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원 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준초고층 건축 공사의 특성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단지내 보안등 시설물로 인해 저층 일부 호실의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저층 일부 호실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옥탑에는 피뢰침 및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는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 설치 시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시설물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시공 시 호실 내 통합단자함 및 전원반 설치로 인하여 벽체 종류 및 해당 부위의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 및 공용부분은 준공 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바람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음.
- 천연대리석 및 화강석, 무늬목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 기기류, 냉난방온도조절기, 환기유니트, 시스템에어컨 등을 포함한 기본 가전제품과 위탁사가 제공하는 무상 가전제품에 대하여 향후 위치 및 규격, 용량,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대해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위탁사가 제공하는 무상 가전제품 중 일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호실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함.
- 생활숙박시설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 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및 식재 토심을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대한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소방 비상차 구획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준초고층 복합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는 준초고층 복합건축물 단지로, 각 시설별 대지 지분은 시설별 각각의 전체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되었고, 금회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 실별 대지지분은 생활숙박시설 부분 대지면적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본 생활숙박시설 공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되는 시설로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면형태, 입주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타 시설의 입주(입점) 시기는 생활숙박시설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정당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 · 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는 각종 심의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 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공급 대상이나, 냉방효율 등 냉방 관련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냉방은 개별냉방이 가능하도록 공급될 예정임. •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인입위치, 관경 등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압력조정설비(지역정압기 포함)를 부지 내에 설치하며, 도시가스 인입위치 및 정압시설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생활숙박시설 단위실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가스 의류건조기 등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전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단지내 냉각탑, 냉난방 설비, 비상발전기, 승강기설비, 하향식 피난구 등 시설에 대하여 작동 소음 및 미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배관 및 덕트 등의 설비 유체흐름에 따른 진동,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간혹 냉각탑에서 백연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자연현상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 민원 등 이의제기 대상이 아님.
-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제연설비인 제연덕트 급 · 배기구 설치로 상 · 하 호실간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조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음을 이유로 하자,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차량 주행동선 개선을 위하여 각 시설별 주차구획 및 경계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환기설비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환기설비 및 주방배기설비 설치에 따라 인근 호실의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3~10층 저층부 호실은 관련 소방법에 의해 전면발코니에 피난기구(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구(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호실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객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호실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지붕 층에는 소방용 고가수조실이 설치됨.
- 본 생활숙박시설 호실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호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169g 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본 생활숙박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인 디에스네트웍스㈜(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 코리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대우건설(이하 "시공사"라 함), 대출금융기관인 우선 수익자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 수탁자 코리아신탁㈜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코리아신탁㈜은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디에스네트웍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코리아신탁㈜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상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 또는 시공사 ㈜대우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및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코리아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코리아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사 디에스네트웍스㈜, 시공사 ㈜대우건설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코리아신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대우건설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적용대상임.
- 계약자는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중도금 대출 및 준공 후 위 표시재산에 대한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위 표시재산의 법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관할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 공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실별 서비스 면적은 같은 타입이라도 호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는 단위호실 A6, 74, 88A-1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단위호실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74타입 객실3의 경우 단열재 설치를 위한 날개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객실 사용 및 가구배치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유상옵션 품목, 선택형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유상옵션은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실 내부가구(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벽면, 바닥, 천정 등)이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사이버 견본주택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 및 분양신고 시 제출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일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안내 등)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의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시설물 위치,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 견본주택 내 VR영상,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와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 부착된 외부전경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각 호실별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8층 ~ 지상 10층 공용복도에는 하향식 피난기구가 추가 설치됨.
- 지상 7층 약자형 객실(101동 : Type-74, Type-88A1, 102동 : Type-88A2, 103동 : Type-74)이며, 승강식 하향피난기구설치 및 욕실 및 거실, 객실에 시청각 설비, 약자편의시설이 추가됨.
- 생활숙박시설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호실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관련법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 또는 건축법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인근 각종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공원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해당기관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 될 수 있으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발코니 확장 등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불법 변경 시 법적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 부위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생활숙박시설 내에 제공되는 발코니는 냉난방, 환기 및 위생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구역으로 동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라디에이터를 가동하는 것이 권장됨.
- 호실 내 설치되는 가전, 가구 등은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 변경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이유로 감액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동의한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입주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름. • 객실 현관에 스마트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음.
- 이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분양계약서 등에 의함.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경우 분양성을 위하여 발코니쪽에 설치되는 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되는 부위를 견본주택 내 표기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실제 창호가 설치 될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주방창호 크기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 창호는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창틀, 하드웨어 등 창호사양 포함)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호실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고,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객실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일부 객실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공품목, 조명기구의 위치, 시스템선반 설치유무 및 길이,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 · 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시공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창호가 미설치 되어있으며 실제 창호가 설치될 경우 인지하고 상담 후 계약하시기 바람, 내부 인테리어 규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객실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객실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구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호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 ·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구(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호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발코니 분합문 설치에 따른 일부 세대의 가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 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타입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 시 단위실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됨.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실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임.

○ 단위실
〈공통〉
- 발코니 부위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결로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부위 단차없음 및 강마루 설치로 무상옵션을 선택 할 경우, 바닥난방이 되지 않음에 따라 결로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같은 타입의 단위실이라 하더라도 호실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실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객실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생활형숙박시설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층간, 단위실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 · 무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함.
- 선택형 타입의 경우 분양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타입으로 일괄 시공되며, 시공되는 타입은 그 시점에 선택현황 및 공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단위실 내부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객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단위실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벽 및 단위실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타입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두께 및 마감의 바닥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단위실 내부 및 단위실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객실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 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실외기실(하향식피난설치)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루버창의 경우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객실환기장치의 및 각종 덕트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출입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함. • 74타입의 경우, 주방 발코니 공간에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설치되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74타입의 경우, 주방 및 주방발코니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88A, 88B타입의 경우, 주방과 거실 사이에 세탁실 도어가 설치되어 가구배치, 세탁실 활용 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88D타입의 경우, 아트월 부위에 고강도 석고보드가 들어가나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거실 발코니 창호로 인하여 소파, TV배치 등 가구 및 가전 배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빌트인 콤비냉장고 및 김치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배치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 내 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푸르지오 스마트 홈(가칭)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푸르지오 스마트 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 LG U+, SKT)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람.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App을 통해 구현되므로,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푸르지오 스마트 홈서비스 중 일부 원격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함.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됨. • IoT 가전기기제어는 객실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함.(소비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조건에 의해 준수해야 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단위실 내부에 시각경보기, 경종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단위실 내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단위실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안방, 객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마감재〉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입별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설치 시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타일별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객실1, 객실2, 객실3 가구는 객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및 주방, 객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입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오염이 발생될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 없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창호 경우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활용도 등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옵션(주방거실 바닥타일, 주방상판 및 벽 엔지니어드스톤)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인을 고려하여 결정된 마감재로 다른 타입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없음.

감리회사

구분	감리회사명	비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감리	㈜아키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코리아신탁㈜	㈜대우건설	디에스네트웍스㈜	㈜뉴앤넥스트컴퍼니

자금관리
- 코리아신탁㈜(110111-2937831)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코리아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대표이사 : 백인균)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90081 (등록일 : 2009.10.12.)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 등기 • 2019년 12월 27일 건축 허가 완료(2019-건축과-신축허가-36)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ouse/2020/pyeongchon
■ 견본주택 위치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9 ■ 분양문의 : 031-348-050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모집공고

PRUGIO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건축과 [건축과 - 14501(2020.07.30)]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임.
[허가번호 2019-건축과-신축허가-36] (2019.12.27.)
■ 견본주택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9

공급대상물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 대지면적 : 전체 8,154.70㎡
- 건축면적 : 5,294.0629㎡, 용적률 : 997.85% 건폐율 : 64.92%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120,354.2410㎡(금회, 근린생활시설 11,201.8680㎡분양)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6층~지하1층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지상3층~지상48층 생활숙박시설(지상24층 피난안전구역)
- 공급규모 : 지상1층~지상2층(금회, 근린생활시설 75실 분양)
- 착공신고일 : 2020년 7월 22일, 건축물사용승인 예정일 : 2024년 4월 예정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급 후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이전등기"
공급대상

(단위 : ㎡)

층	호수	실별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1층	101	57.8725	25.1210	82.9935	12.8996	47.6744	143.5675	8.3689
	102	64.3200	27.9197	92.2397	14.3367	52.9857	159.5621	9.3013
	103	62.5325	27.1438	89.6763	13.9383	51.5132	155.1278	9.0428
	104	67.9150	29.4802	97.3952	15.1380	55.9473	168.4805	9.8211
	105	71.4709	31.0238	102.4947	15.9307	58.8765	177.3019	10.3354
	106	59.8500	25.9794	85.8294	13.3404	49.3034	148.4732	8.6549
	107	42.7312	18.5485	61.2797	9.5246	35.2012	106.0055	6.1793
	108	42.4342	18.4196	60.8538	9.4584	34.9566	105.2688	6.1364
	109	68.0695	29.5473	97.6168	15.1724	56.0745	168.8637	9.8435
	110	67.4809	29.2918	96.7727	15.0413	55.5896	167.4036	9.7584
	111	60.3487	26.1959	86.5446	13.4515	49.7143	149.7104	8.7270
	112	49.6492	21.5515	71.2007	11.0666	40.9002	123.1675	7.1797
	113	43.4543	18.8624	62.3167	9.6857	35.7969	107.7993	6.2839
	114	49.4597	21.4692	70.9289	11.0244	40.7441	122.6974	7.1523
	115	18.6248	8.0845	26.7093	4.1513	15.3428	46.2034	2.6933
	116	40.8211	17.7194	58.5405	9.0988	33.6277	101.2670	5.9031
	117	39.0920	16.9689	56.0609	8.7134	32.2033	96.9776	5.6531
	118	24.8641	10.7929	35.6570	5.5420	20.4826	61.6816	3.5956
	119	70.5250	30.6132	101.1382	15.7198	58.0973	174.9553	10.1986
	120	75.6908	32.8555	108.5463	16.8712	62.3528	187.7703	10.9456
	121	79.5601	34.5351	114.0952	17.7337	65.5403	197.3692	11.5051
	122	89.6607	38.9210	128.5817	19.9881	73.8627	222.4325	12.9669
	123	64.1035	27.8258	91.9293	14.2884	52.8074	159.0251	9.2700
	124	63.8400	27.7114	91.5514	14.2297	52.5903	158.3714	9.2319
	125	84.6362	36.7385	121.3747	18.8651	69.7219	209.9617	12.2392
	126	67.2763	29.2030	96.4793	14.9956	55.4211	166.8960	9.7288
	127	64.3200	27.9197	92.2397	14.3367	52.9857	159.5621	9.3013
	128	67.3529	29.2362	96.5891	15.0127	55.4842	167.0860	9.7399
2층	201	81.1879	35.2417	116.4296	20.6462	66.8813	203.9571	11.7405
	202	50.4416	21.8954	72.3370	12.8273	41.5529	126.7172	7.2943
	203	42.2400	18.3353	60.5753	10.7416	34.7966	106.1135	6.1083
	204	61.2480	26.5862	87.8342	15.5755	50.4551	153.8648	8.8570
	205	61.2480	26.5862	87.8342	15.5755	50.4551	153.8648	8.8570
	206	66.8800	29.0310	95.9110	17.0077	55.0946	168.0133	9.6715
	207	53.5040	23.2248	76.7288	13.6061	44.0757	134.4106	7.7372
	208	46.4640	20.1689	66.6329	11.8159	38.2763	116.7251	6.7191
	209	75.0464	32.5758	107.6222	19.0844	61.8220	188.5286	10.8524
	210	109.7379	47.6370	157.3749	27.9115	90.4028	275.6892	15.8719
	211	64.4241	27.9649	92.3890	16.3832	53.0715	161.8437	9.3163
	212	35.8715	15.5709	51.4424	9.1221	29.5503	90.1148	5.1873
	213	35.9407	15.6009	51.5416	9.1397	29.6073	90.2886	5.1973
	214	50.4555	21.9015	72.3570	12.8309	41.5644	126.7523	7.2963
	215	28.5310	12.3846	40.9156	7.2554	23.5033	71.6743	4.1258
	216	25.2244	10.9493	36.1737	6.4145	20.7794	63.3676	3.6477
	217	33.0835	14.3607	47.4442	8.4131	27.2536	83.1109	4.7842
	218	92.9863	40.3631	133.3494	23.6466	76.6006	233.5966	13.4467
	219	91.3500	39.6528	131.0028	23.2305	75.2526	229.4859	13.2101
	220	63.4375	27.5367	90.9742	16.1322	52.2588	159.3652	9.1737
	221	95.7512	41.5633	137.3145	24.3497	78.8783	240.5425	13.8465
	222	92.2250	40.0326	132.2576	23.4530	75.9734	231.6840	13.3366
	223	71.3388	30.9664	102.3052	18.1416	58.7677	179.2145	10.3163
	224	87.8850	38.1487	126.0337	22.3493	72.3982	220.7812	12.7090
	225	55.5170	24.0986	79.6156	14.1180	45.7340	139.4676	8.0283
	226	48.7520	21.1620	69.9140	12.3976	40.1611	122.4727	7.0500
	227	45.0560	19.5577	64.6137	11.4578	37.1164	113.1879	6.5155
	228	102.3712	44.4368	146.8080	26.0332	84.3317	257.1729	14.8039
	229	58.3360	25.3222	83.6582	14.8349	48.0562	146.5493	8.4359
	230	58.3360	25.3222	83.6582	14.8349	48.0562	146.5493	8.4359
	231	58.3360	25.3222	83.6582	14.8349	48.0562	146.5493	8.4359
	232	73.5446	31.9239	105.4685	18.7025	60.5848	184.7558	10.6352
	233	28.4012	12.3282	40.7294	7.2224	23.3964	71.3482	4.1071
	234	33.7059	14.6309	48.3368	8.5715	27.7663	84.6746	4.8742
	235	60.4184	26.2261	86.6445	15.3645	49.7717	151.7807	8.7371
	236	70.3560	30.5398	100.8958	17.8916	57.9581	176.7455	10.1741
	237	87.5532	38.0047	125.5579	22.2649	72.1249	219.9477	12.6610
	238	33.9048	14.7172	48.6220	8.6220	27.9302	85.1742	4.9029
	239	88.1466	38.2623	126.4089	22.4158	72.6137	221.4384	12.7468
	240	47.3980	20.5743	67.9723	12.0533	39.0457	119.0713	6.8542
	241	58.3360	25.3222	83.6582	14.8349	48.0562	146.5493	8.4359
	242	59.7944	25.9553	85.7497	15.2058	49.2576	150.2131	8.6468
	243	38.5211	16.7210	55.2421	9.7960	31.7330	96.7711	5.5705
	244	56.1356	24.3671	80.5027	14.2753	46.2436	141.0216	8.1177
	245	32.6768	14.1842	46.8610	8.3097	26.9186	82.0893	4.7253
	246	46.5876	20.2225	66.8101	11.8473	38.3781	117.0355	6.7370
	247	63.1361	27.4058	90.5419	16.0556	52.0105	158.6080	9.1301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금액 : 원)

층	호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분양가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40%) 1차(10%) 2021.12.15	2차(10%) 2022.07.15	3차(10%) 2023.02.15	4차(10%) 2023.09.15	잔금(50%) 입점지정일
1층	101	714,606,860	620,357,400	62,035,740	1,397,000,000	139,700,000	139,700,000	139,700,000	139,700,000	139,700,000	698,500,000
	102	794,200,930	689,453,700	68,945,370	1,552,600,000	155,260,000	155,260,000	155,260,000	155,260,000	155,260,000	776,300,000
	103	772,153,940	670,314,600	67,031,460	1,509,500,000	150,950,000	150,950,000	150,950,000	150,950,000	150,950,000	754,750,000
	104	838,601,650	727,998,500	72,799,850	1,639,400,000	163,940,000	163,940,000	163,940,000	163,940,000	163,940,000	819,700,000
	105	882,490,880	766,099,200	76,609,920	1,725,200,000	172,520,000	172,520,000	172,520,000	172,520,000	172,520,000	862,600,000
	106	739,006,880	641,539,200	64,153,920	1,444,700,000	144,470,000	144,470,000	144,470,000	144,470,000	144,470,000	722,350,000
	107	527,642,800	458,052,000	45,805,200	1,031,500,000	103,150,000	103,150,000	103,150,000	103,150,000	103,150,000	515,750,000
	108	523,959,830	454,854,700	45,485,470	1,024,300,000	102,430,000	102,430,000	102,430,000	102,430,000	102,430,000	512,150,000
	109	840,494,350	729,641,500	72,964,150	1,643,100,000	164,310,000	164,310,000	164,310,000	164,310,000	164,310,000	821,550,000
	110	833,230,620	723,335,800	72,333,580	1,628,900,000	162,890,000	162,890,000	162,890,000	162,890,000	162,890,000	814,450,000
	111	745,145,200	646,868,000	64,686,800	1,456,700,000	145,670,000	145,670,000	145,670,000	145,670,000	145,670,000	728,350,000
	112	613,068,230	532,210,700	53,221,070	1,198,500,000	119,850,000	119,850,000	119,850,000	119,850,000	119,850,000	599,250,000
	113	536,543,430	465,778,700	46,577,870	1,048,900,000	104,890,000	104,890,000	104,890,000	104,890,000	104,890,000	524,450,000
	114	610,664,040	530,123,600	53,012,360	1,193,800,000	119,380,000	119,380,000	119,380,000	119,380,000	119,380,000	596,900,000
	115	213,819,430	185,618,700	18,561,87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209,000,000
	116	468,663,460	406,851,400	40,685,140	916,200,000	91,620,000	91,620,000	91,620,000	91,620,000	91,620,000	458,100,000
	117	453,675,670	393,840,300	39,384,030	886,90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443,450,000
	118	288,553,850	250,496,500	25,049,650	564,10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282,050,000
	119	835,890,610	725,644,900	72,564,490	1,634,100,000	163,410,000	163,410,000	163,410,000	163,410,000	163,410,000	817,050,000
	120	897,120,660	778,799,400	77,879,940	1,753,800,000	175,380,000	175,380,000	175,380,000	175,380,000	175,380,000	876,900,000
	121	943,669,880	819,209,200	81,920,920	1,844,800,000	184,480,000	184,480,000	184,480,000	184,480,000	184,480,000	922,400,000
	122	1,069,352,730	928,315,700	92,831,570	2,090,500,000	209,050,000	209,050,000	209,050,000	209,050,000	209,050,000	1,045,250,000
	123	767,703,680	666,451,200	66,645,120	1,500,800,000	150,080,000	150,080,000	150,080,000	150,080,000	150,080,000	750,400,000
	124	772,460,900	670,581,000	67,058,100	1,510,100,000	151,010,000	151,010,000	151,010,000	151,010,000	151,010,000	755,050,000
	125	1,045,055,030	907,222,700	90,722,270	2,043,000,000	204,300,000	204,300,000	204,300,000	204,300,000	204,300,000	1,021,500,000
	126	830,724,110	721,159,900	72,115,990	1,624,000,000	162,400,000	162,400,000	162,400,000	162,400,000	162,400,000	812,000,000
	127	794,200,930	689,453,700	68,945,370	1,552,600,000	155,260,000	155,260,000	155,260,000	155,260,000	155,260,000	776,300,000
	128	831,644,880	721,959,200	72,195,920	1,625,80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162,580,000	812,900,000
2층	201	407,382,250	353,652,500	35,365,250	796,400,000	79,640,000	79,640,000	79,640,000	79,640,000	79,640,000	398,200,000
	202	262,772,840	228,115,600	22,811,560	513,70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256,850,000
	203	220,060,070	191,036,300	19,103,630	430,20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215,100,000
	204	319,041,030	276,962,700	27,696,270	623,70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311,850,000
	205	319,041,030	276,962,700	27,696,270	623,70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311,850,000
	206	335,614,670	291,350,300	29,135,030	656,100,000	65,610,000	65,610,000	65,610,000	65,610,000	65,610,000	328,050,000
	207	278,732,560	241,970,400	24,197,040	544,90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272,450,000
	208	242,055,900	210,131,000	21,013,100	473,20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236,600,000
	209	376,588,110	326,919,900	32,691,990	736,20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368,100,000
	210	519,151,450	450,680,500	45,068,050	1,014,900,000	101,490,000	101,490,000	101,490,000	101,490,000	101,490,000	507,450,000
	211	270,496,900	234,821,000	23,482,100	528,80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264,400,000
	212	150,594,360	130,732,400	13,073,240	294,40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147,200,000
	213	150,901,320	130,998,800	13,099,880	295,0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147,500,000
	214	211,824,410	183,886,900	18,388,690	414,10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207,050,000
	215	121,948,720	105,864,800	10,586,480	238,400,000	23,840,000	23,840,000	23,840,000	23,840,000	23,840,000	119,200,000
	216	105,682,040	91,743,600	9,174,360	206,600,000	20,660,000	20,660,000	20,660,000	20,660,000	20,660,000	103,300,000
	217	136,169,220	118,209,800	11,820,980	266,200,000	26,620,000	26,620,000	26,620,000	26,620,000	26,620,000	133,100,000
	218	376,434,740	326,786,600	32,678,660	735,90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73,590,000	367,950,000
	219	369,835,980	321,058,200	32,105,820	723,0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361,500,000
	220	266,353,490	231,224,100	23,122,410	520,70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260,350,000
	221	426,615,770	370,349,300	37,034,930	834,0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417,000,000
	222	384,209,960	333,536,400	33,353,640	751,100,000	75,110,000	75,110,000	75,110,000	75,110,000	75,110,000	375,550,000
	223	297,198,790	258,001,100	25,800,110	581,0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290,500,000
	224	366,101,740	317,816,600	31,781,660	715,70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357,850,000
	225	228,551,530	198,407,700	19,840,770	446,800,000	44,680,000	44,680,000	44,680,000	44,680,000	44,680,000	223,400,000
	226	225,380,050	195,654,500	19,565,450	440,60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220,300,000
	227	208,294,920	180,822,800	18,082,280	407,20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40,720,000	203,600,000
	228	506,107,410	439,356,900	43,935,690	989,400,000	98,940,000	98,940,000	98,940,000	98,940,000	98,940,000	494,700,000
	229	317,711,090	275,808,100	27,580,810	621,10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310,550,000
	230	317,711,090	275,808,100	27,580,810	621,10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310,550,000
	231	317,711,090	275,808,100	27,580,810	621,10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310,550,000
	232	369,068,690	320,392,100	32,039,210	721,500,000	72,150,000	72,150,000	72,150,000	72,150,000	72,150,000	360,750,000
	233	118,981,880	103,289,200	10,328,920	232,600,000	23,260,000	23,260,000	23,260,000	23,260,000	23,260,000	116,300,000
	234	183,588,050	159,374,500	15,937,450	358,90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179,450,000
	235	329,067,070	285,666,300	28,566,630	643,30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64,330,000	321,650,000
	236	369,068,690	320,392,100	32,039,210	721,500,000	72,150,000	72,150,000	72,150,000	72,150,000	72,150,000	360,750,000
	237	459,251,340	398,680,600	39,868,060	897,800,000	89,780,000	89,780,000	89,780,000	89,780,000	89,780,000	448,900,000
	238	156,732,680	136,061,200	13,606,120	306,40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30,640,000	153,200,000
	239	462,371,660	401,389,400	40,138,940	903,90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451,950,000
	240	258,168,990	224,119,100	22,411,910	504,700,000	50,470,000	50,470,000	50,470,000	50,470,000	50,470,000	252,350,000
	241	317,711,090	275,808,100	27,580,810	621,10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62,110,000	310,550,000
	242	325,690,350	282,735,500	28,273,550	636,700,000	63,670,000	63,670,000	63,670,000	63,670,000	63,670,000	318,350,000
	243	158,574,220	137,659,800	13,765,980	310,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155,000,000
	244	231,109,090	200,628,100	20,062,810	451,80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225,900,000
	245	136,936,510	118,875,900	11,887,590	267,70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26,770,000	133,850,000
	246	191,772,550	166,479,500	16,647,950	374,900,000	37,490,000	37,490,000	37,490,000	37,490,000	37,490,000	187,450,000
	247	259,908,210	225,628,900	22,562,890	508,10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254,050,000

- 총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발생되며,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단, 입점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둥이 있는 호수의 전용면적에는 기둥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호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면적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 계산 상 단수 정리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동 · 호수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부여한 동 · 호수로서 향후 건축물대장에 등재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호실별로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 · 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해야 함.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함.(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2019. 08. 20 이후 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청약신청자격
- 분양공고일(2020.07.3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호실" 별 1건씩, 총3건까지 신청 가능함.(동일인이 동일 "호실"에 2건 또는 총 4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전체 청약신청과 당첨 자체를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9에 위치한 분양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인터넷 청약신청은 불가함.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수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가 임의로 호실을 통합 또는 개별 분리하여 분양할 수 있음.

거주자 우선공급
- 본 시설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에 따라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을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으로 함.
- 거주자 우선공급은 청약신청자 중 안양시 거주자를 우선대상으로 추첨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청약자에 포함함.

청약신청 방식 및 일정
- 청약신청은 "호실" 별로 접수해야 함.
- **청약일정**

구분	공급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0.08.03 (10:00~18:00)	당사 견본주택
공개추첨 및 당첨자 발표	2020.08.04 (14:00)	당사 견본주택에서 추첨에 의해 호실별로 결정
계약일자	2020.08.05 (10:00~16:00)	

- 당 청약접수 경쟁률은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호실별	3,000만원	㈜하나은행	581-910051-04204	코리아신탁㈜

- 청약신청 시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현장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시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2건 이상 신청 시, 청약신청 건 별 각각의 청약신청금을 분리하여 납부해야 함)
- 청약신청금은 청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 - 청약신청 종료일 18:00까지만 청약신청금 납부가 가능함. - 청약신청금 계좌는 공급대금 납부 계좌와 다름.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일시 : 2020.08.21 이후부터 청약신청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일괄 송금.(환불일시는 5일 이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제출한 환불계좌 오류, 환불불가 계좌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금은 당첨과 무관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청약신청금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 본인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청약신청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대리인 신청 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만 가능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점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동일인의 청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수량에 맞추어 준비해야 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당첨자 확인은 견본주택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함.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의 경우 위탁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시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개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가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함.
-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581-910051-02004	코리아신탁㈜
중도금/잔금	㈜하나은행	호실별 가상계좌	코리아신탁㈜

-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공급 호수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될 예정이므로, 호수별로 계좌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포함한 공급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예금주 코리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대금을 관리함. • 매수인의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금액 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공급대금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입금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호를 계약한 정대우 → 101 정대우)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중도금 대출안내
- 본 근린생활시설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타입별로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점지정기간 내 입점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점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입점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계약조건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위탁사 및 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위탁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타 호실 계약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시기는 단지 내 타 시설(생활숙박시설 등)과 입점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 본 목적물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되었음을 인지하고 관계법령 및 일반관계를 준수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입점예정월 : 2024년 4월(정확한 입점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실 입점일이 입점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점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점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시기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근린생활시설
- 본 건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 본 건물 취득시에는 4.6% 취득세가 발생함. • 계약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되, 혐오시설 또는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업종으로 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 점포의 용도변경은 관계 건축법령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가관청에 문의하여야함.
- 동일 소유자(동업 포함)의 업종 중복에 의한 합산면적에 따라 입점가능 업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청약 전에 면적 및 입점 가능 업종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임차 테넌트 입점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업종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이는 계약자 및 계약자가 임대한 상가의 임차인 또한 같음.
- 현장여건 및 기능 ·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등본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함.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함.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점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견본주택 및 상업시설 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음.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샘플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이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각종 광고 홍보물(견본주택 및 상업시설 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지하철역, 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추후 각 시행주체에서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기관, 관계기관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함.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함.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을 위한 호실별 인테리어 진행 가능하며, 인접호실에 구조안전, 영업권, 기타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의 인테리어에 대하여 계약자는 동의하기로 함.
- 분양된 호실에 관한 제반사항은(영업허가, 용도변경, 점포관리, 등록 등의 기타인가) 공급받는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급받는 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함.
- 입점지정 최초일부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공급회사에 제출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함.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 및 위탁자, 시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 간판, 현수막 등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 · 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지 관련
- 당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 각종 평가(교통영향평가 등)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계약 시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점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됨.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생활숙박시설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 (지하1층 램프에는 입주차량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의 동선 분리를 위하여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둥이 있는 호수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공용면적은 지하층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면적을 포함되어 있음.
- 1층 공개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 내 ·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외관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시민대로변 대지경계선에서 5m 내), 보행자 통로(서측 8m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2m 내)는 공중에 개방되는 시설로 입점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음. •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개공지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 내에 각종 시설물을 임의 설치 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음. • 일부 호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인접동 및 인접호실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고, 세대 간 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음. • 야간조명 효과, 차량 진출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항공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동 외벽에 항공장애등이 설치 운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부지 내 조경시설물, 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소방, 이삿짐) 구획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부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근접한 호실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부지 차량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DA 급 · 배기구,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 조망, 빛 반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가환기 시스템 및 공조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호실의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방화구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호실 내부 또는 호실간 또는 공실 전면에 설치되는 방화벽 및 방화셔터를 포함한 관련 설치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단지외부 도로의 레벨, 경사도 및 단지 내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안양 평촌지구는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으로 각 점포당 실내 냉 · 난방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냉방 26~28℃, 난방 18~21℃, 기본 냉 · 난방 설비(팬코일 유니트)를 공급할 예정이고 차후 입점자가 냉 · 난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시에는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과 다른 근린생활시설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입점자가 개별로 직접 설치하여야 함.(추가 냉 · 난방 설비는 지정된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냉 · 난방 배관은 공용부위를 통해서만 배관을 하여야 함.) • 모형 및 공급간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는 차량이동 시 조명 소음, 빛 반사,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은 화강석, 금속재 시트, 외부용 페인트마감으로 시공되어질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외부환경 디자인 및 상업 활성화를 위한 입면 변경에 따른 색상 및 자재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2층 206호, 207호(북측 공개공지 상부)는 전면 유리 커튼월 후면 보강제, 구조보강 설치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호실은 공사시행 중에 샘플호실로 사용될 수 있음.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시공되어 있으며 특정시설의 입점 시에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공사시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변경 시에는 소방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휀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물품의 하역은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계약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호실 내의 창호크기, 개폐방향, 설치 위치 및 세부디자인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보안등 시설물로 인해 저층 일부 호실의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저층 일부 호실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호실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준초고층 복합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은 생활숙박시설 공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되는 시설로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면형태,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타 시설의 입주 시기는 근린생활시설 입점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정당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점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 · 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는 각종 심의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인입위치, 관경 등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압력조정설비(지역정압기 포함)를 부지 내에 설치하며, 도시가스 인입위치 및 정압시설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준공 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음.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 및 비용 하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전 및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함. • 단지내 냉각탑, 냉난방 설비, 비상발전기, 승강기설비, 하향식 피난구 등 시설에 대하여 작동 소음 및 미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배관 및 덕트 등의 설비 유체흐름에 따른 진동,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간혹 냉각탑에서 백연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자연현상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 민원 등 이의제기 대상이 아님.
- 지하주차장의 차량 주행동선 개선을 위하여 각 시설별 주차구획 및 경계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169g 이상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본 근린생활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인 디에스네트웍스㈜(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 코리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대우건설(이하 "시공사"라 함), 대출금융기관인 우선 수익자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 수탁자 코리아신탁㈜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코리아신탁㈜은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점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디에스네트웍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코리아신탁㈜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상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 또는 시공사 (주)대우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및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코리아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코리아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자 디에스네트웍스㈜, 시공사 ㈜대우건설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주)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코리아신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디에스네트웍스㈜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대우건설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 공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점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이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분양계약서 등에 의함.

감리회사

구분	감리회사명	비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감리	㈜아키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코리아신탁㈜	㈜대우건설	디에스네트웍스㈜	㈜뉴앤넥스트컴퍼니

자금관리
- 코리아신탁㈜(110111-2937831)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코리아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대표이사 : 백인균)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90081 (등록일 : 2009.10.12.)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 등기 • 2019년 12월 27일 건축 허가 완료[허가번호 2019-건축과-신축허가-36]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ouse/2020/pyeongchon
■ 견본주택 위치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9 ■ 분양문의 : 031-348-0505

※ 본 입점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